

Deloitte.



2024.07 | 제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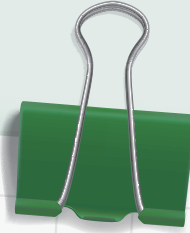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카드뉴스

: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리더 메시지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 3호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 준수율을 파악하여
개괄적인 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FY2023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상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파악하여 시사점 제공

개요

- ☑ **분석 대상** |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규모 5천억 원 이상 477사
(2024년 5월 말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 기업)
- ☑ **분석 기간** | 2023 회계연도
- ☑ **분석 자료** |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내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15개 항목)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주주

- 1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2 전자투표 실시
- 3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신설*** 4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5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이사회

- 6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7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8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9 집중투표제 채택
- 10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임원 선임 방지 정책 수립 여부
- 신설*** 11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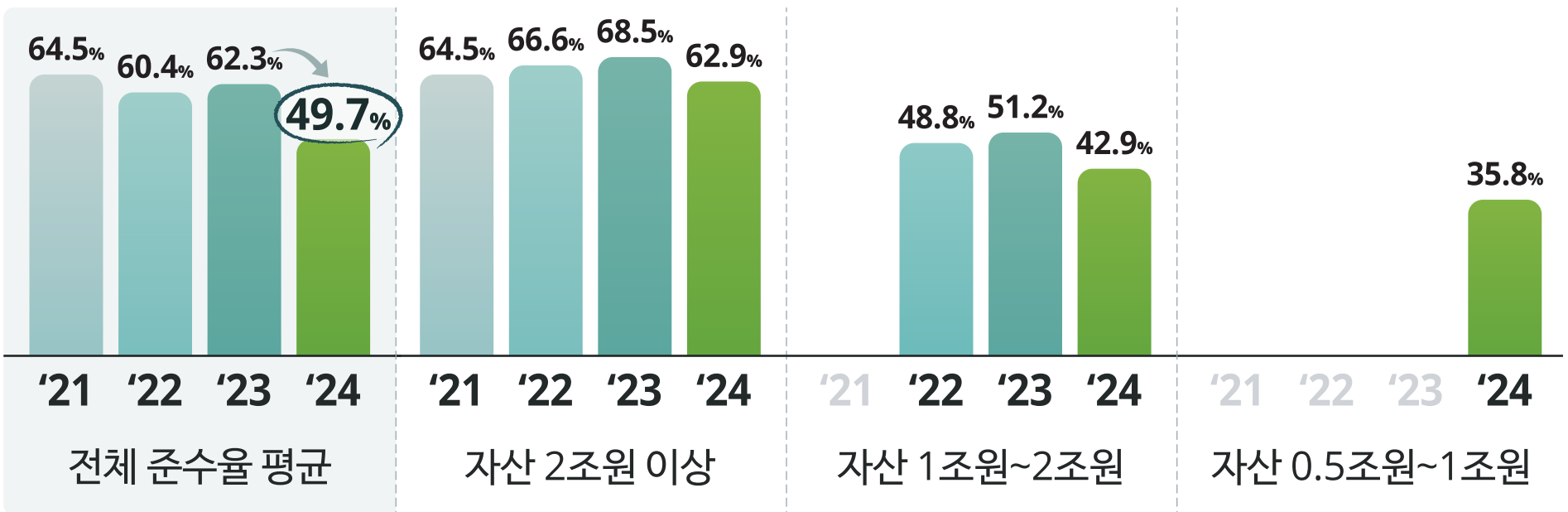
감사기구

- 12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13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14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15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 가능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23.10.) 사항은 '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전체 평균 준수율 | 49.7%

✓ 전기대비 12.6%p 하락

→ 성실한 준수 권고

✓ 올해부터 공시의무가 자산(연결) 5천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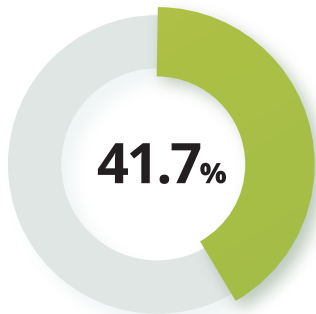
✓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도 3차 가이드라인 개정(23.10) 최초 적용 시점

→ 전체 평균 준수율 하락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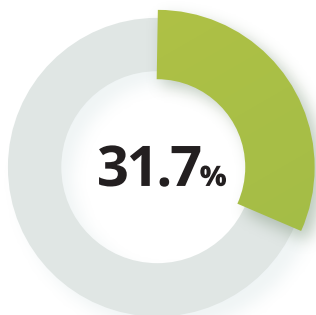
핵심지표 평균 준수를 45% 미만

핵심지표 5 배당정책·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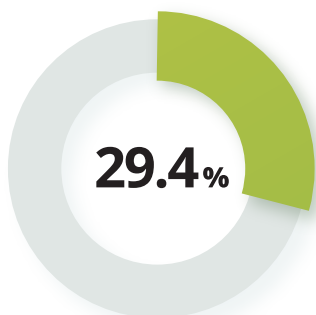
· 배당정책·배당실시 계획의 공시 준수에 수동적인 모습

핵심지표 6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운영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준수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 준수율은 미흡한 수준

핵심지표 1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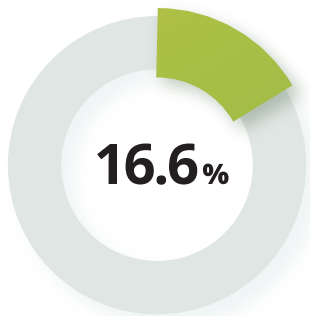


· 상법(제363조) 상 의무기간(2주)만을 준수하는 선에서 공시중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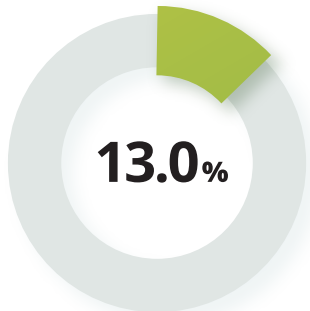
핵심지표 평균 준수를 45% 미만

신설 **핵심지표 4**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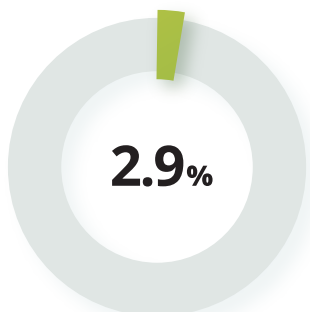
·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향후계획 마련,
주주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것이 권고

핵심지표 8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이사회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권고되나
준수율은 미흡

핵심지표 9 집중투표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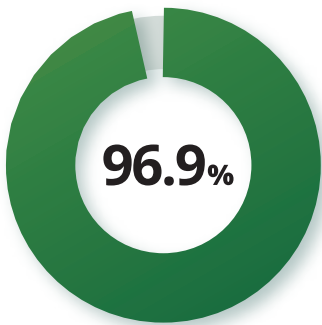


· 이사회 구성시 소액주주의 이익 반영에 수동적인 경향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평균 준수를 7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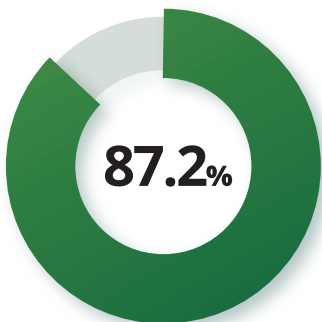
핵심지표 15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 가능한 절차 마련



- 내부감사기구의 정보접근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회사에 관련 규정·절차가 구체적으로 준비·실행됨

*상법 제412조

핵심지표 13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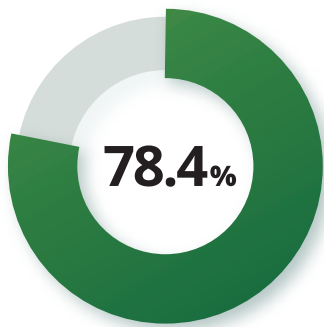


- 상법(제542의11)상 상장사의 감사위원회에는 1명 이상의 회계·재무전문가 보유 명시, 감사는 동법을 적용받지 않음
-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개별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최소 1명의 회계·재무 전문가 재직중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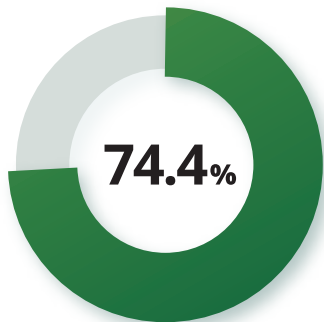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70% 이상

핵심지표 2 전자투표 실시



- 보다 많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시 편의성·접근성 제고

핵심지표 7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마련·운영



- 내부통제정책에는 '위험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경영', '공시정보관리' 등의 정책 포함이 요구
- 주요 미준수 사유로 '위험관리 관련 명문화된 정책 마련'이 포함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개요

'23.1.30.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 발표

'24.6.5. ~ '24.7.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실시

'24.Q3

개정 절차 거쳐 3분기 중 시행령·규정 개정안 시행 추진

“

자사주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될 것

”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현행

- 인적분할은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 신주배정이 이뤄짐
-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데 활용(자사주 마법) 된다는 비판

📖 자사주 취득·보유·처분 전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현행

- 자사주 취득 후 처리계획 등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임에도 공시 미흡

개정안

- 자사주 5% 이상 보유시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 규제차익 해소

현행

- 신탁 취득방식 악용 우려, 신탁계약 중 자사주 처분은 공시 의무 없어 투자자 보호 공백

개정안

- 취득·처분과정에서 직접 취득·처분과 동일규제 적용

KSSB,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개요

- ☑️ 글로벌 자본시장에 비교 가능하고 양질의 지속가능성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 제정 원칙

기업의 공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외 주요국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기준 제정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의 수용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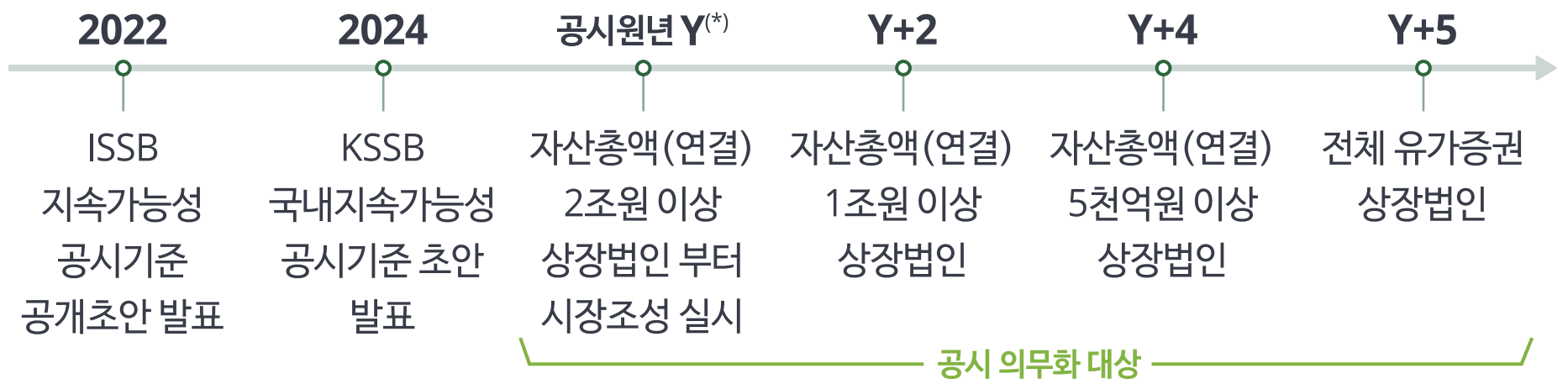
- ☑️ 의견조회 기간('24.5.1. ~ '24.8.31.) 이후 최종기준제정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해 최종안에 반영 예정

KSSB,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발표

주요 내용

| 구분 | 번호 | 명칭 | 비고 |
|------------------|-------|------------------------------|--|
| 의무 공시기준 | 제1호 |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 지속가능성 사안 관련 개념적 기반과 일반사항 제시(IFRS S1 기반) |
| | 제2호 | 기후 관련 공시사항 |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련 공시 요구사항 제시(IFRS S2 기반) |
| 추가 공시 (선택) 기준 | 제101호 |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선택) 사항 |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 중 정책 목적에 따라 공시가 권유되는 사안을 다룸 |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일정



*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었으나 '26년 이후로 연기하였으며, 구체적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 3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자문교수단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krccg@deloitte.com

김한석 Partner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hansukim@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